

Lively
Gangwon

**2012년도
제2회 추가경정**

**일반 및 특별회계
성과예산서**

2012. 12. 14 강원도의회 의결



강원도
GANGWON PROVINCE



목 차



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총칙	3
<input type="checkbox"/> 회계별 예산규모	7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입총괄표	11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출총괄표	21
▶ 기능별 / 23	▶ 조직별 / 29
▶ 성질별 / 39	▶ 총액인건비 / 53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입·세출예산서	57
▶ 세입예산서 / 59	▶ 세출예산서 / 67
<input type="checkbox"/> 명시이월사업조서	133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입예산사업명세서	139
▶ 일반회계 / 141	▶ 기타특별회계 / 157
▶ 공기업특별회계 / 163	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출예산사업명세서	167
※ 부서별 목차 (일반+기타특별회계) 별도 참고	
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기업특별회계	373
▶ 지역개발기금 / 373	

※ 부서별 목차 (일반+기타특별회계)

▶ **대변인실** 169

▶ **글로벌사업단** 173

▶ **감사관실** 177

▶ **기획조정실** 181

기획관실 / 183

예산담당관실 / 185

법무통계담당관실 / 186

정보화담당관실 / 187

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/ 189

서울사무소 / 190

▶ **자치행정국** 191

총무과 / 193

자치정책과 / 196

세정과 / 198

회계과 / 199

비상기획과 / 200

▶ **문화관광체육국** 201

관광정책과 / 203

관광마케팅과 / 206

문화예술과 / 208

체육진흥과 / 211

국제관광정보센터 / 212

디엠제트박물관 / 213

▶ **보건복지여성국** 215

복지정책과 / 217

경로장애인과 / 226

여성청소년가족과 / 232

보건정책과 / 235

식품의약과 / 238

여성가족연구원 / 241

▶ **농정국** 243

농어촌정책과 / 245

친환경농업과 / 247

농식품유통과 / 251

축산진흥과 / 253

농산물원종장 / 256

감자종자진흥원 / 257

축산기술연구센터 / 259

가축위생시험소(지소포함) / 261

▶ **녹색자원국** 267

환경정책과 / 269

맑은물보전과 / 273

산림자원과 / 275

산림소득과 / 276

에너지자원과 / 277

자연환경연구사업소 / 278

산림개발연구원(지원포함) / 280

▶ **경제진흥국** 283

경제정책과 / 285

기업지원과 / 288

투자유치과 / 290

투자기반조성과 / 291

전략산업과 / 292

자원개발과 / 294

▶ **건설방재국** 295

지역도시과 / 297

건축주택과 / 298

토지자원과 / -

도로철도교통과 / 299

방재담당관실 / 302

도로관리사업소(지소포함) / 305

▶ **동계올림픽추진본부** 313

▶ **소방본부** 317

소방행정과 / 319

방호구조과 / 321

종합상황실 / 322

소방학교 / -

소방서(14개) / 323

▶ **의회사무처** 337

▶ **농업기술원** 341

농업기술원 / 343

농식품연구소 / 345

옥수수연구소 / -

특화작물연구소 / -

인삼약초연구소 / 346

미래농업교육원 / 347

▶ **강원도립대학** 349

▶ **환동해본부** 353

기획총괄과 / 355

수산정책과 / 357

어업지원과 / 359

해양항만과 / 360

수산자원연구원 / 362

수산기술지원센터 / -

민물고기자원센터 / -

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/ 363

▶ **인재개발원** 365

▶ **보건환경연구원** 369

예 산 총 칙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3,792,925,129	113,785,000
일 반 회 계	3,342,974,867	100,289,000
특 별 회 계	449,950,262	13,496,000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20,523,000	6,615,000
기 타 특 별 회 계	229,427,262	6,881,000
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	10,113,262	303,00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207,448,000	6,223,000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11,866,000	355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(계속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,807,60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6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

